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. 6. 16 선고 2020가단33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]

전 문

원고A문중

피고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6. 16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E 임야 694m² 및 F 임야 2,085m²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. 6. 21. 접수 제127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편병호

별지